

영등포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김화영의원 대표발의】



2012. 2. 24

運 營 委 員 會

專門委員 李憲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7호로 2012년 2월 10일 김화영 의원의 3인
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의원의 입법 활동 및 정책수립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
- 나.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 지방별정 6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규칙안은 다원화 되어 가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생산적인 조직운영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의 보좌기능을 정비하여 의정 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 안 제1조에 인용된 근거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현행 조례명과 일치하지 않아 변경된 조례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표시한 별표를 삭제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주사,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변경하였으며
 - 그밖에 부문은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과 용어,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
- 검토결과 이 개정규칙안은 변경된 조례명을 일치시키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저촉됨이 없는 적절한 규칙 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국의 하부 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사항은 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